

주부의 생애가사노동가치의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Method of the Life-Time Household Work

고신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김선희

Dept. of Home Management, Kosin Univ.
Full-time Instructor : Kim Seon Hee

〈목 차〉

- | | |
|--------------------|------------------------|
| I. 서 론 | III. 생애가사노동가치 평가방법의 비교 |
| II. 생애가사노동가치의 평가방법 | IV. 결론 및 논의 |

참고문헌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reasonable method of evaluation on the value of the life-time household work. It is very necessary work for homemaker claim her share in the matrimonial property in relation to her life-time household work and to provide the basic data to measuring proper compensation for homemaker and calculating of the donation tax and inheritance tax amount.

To compare the difference of the method of evaluation on the value of the life-time household work is evaluated by three methods : ① the model of the life-time household work which is reflected major variables in the FLC frame work, ② marital stage, ③ total marital perio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 1) Among the three evaluation method, The method of Total marital period is evaluated the lowest value of the life-time household work.
- 2) The evaluation method of marital stage is more resonable method than the method of total marital period, have a convenience of evaluation but it dos'nt reflected major variables which influence the value of life- time household work.
- 3) The most resonable method of evaluation on the value of the life-time household work is revealed the model of the life-time household work which is reflected major variables in the FLC frame work, the age of first and last offspring, marital period.

I.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개별 주부가 결혼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행한 생애가사노동가치를 산출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각 평가방법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함으로써 주부의 생애가사노동가치와 관련된 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평가방법을 모색하여 제시하는데 있다.

주부가 이미 수행해 온 가사노동량 및 앞으로 수행할 미래의 가사노동량을 산출하는 것과 그것에 기초하여 과거 및 미래의 가사노동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가사노동가치 연구의 실천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긴요한 과제이다. 즉, 가사노동의 귀속가치와 관련하여 첫째, 불의의 사고로 어떤 주부가 가사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이다. 그 상실이 일시적인 경우는 기준시점에 의한 평가를 하여도 무방하나, 그것이 장기적 또는 영구적인 경우와 주부가 사망한 경우는 미래의 일실노동가치를 산정해야 하므로 새로운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둘째, 남편으로부터의 재산증여 및 상속시의 세액산정이나 재산분할청구시에는 해당 주부가 결혼한 이후 현재까지 가사노동을 통해 가정재산형성에 기여한 가치가 객관적으로 포함되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개별 주부의 가사노동 상황이 고려된 가운데, 해당 주부가 결혼 이후 현재까지 수행해 온 가사노동량과 내용이 반영되도록 생애가사노동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현재까지의 주부의 가사노동가치 평가에 관한 제연구의 성과(김애설 : 1985, 최명숙 : 1987, 문숙재 · 정영금 : 1988, 소연경 : 1988, 정영금 : 1989, 김선희 : 1990, 1991b)를 기초로 도출한 세 가지의 생애가사노동가치 평가방법, 즉 ① 본 연구자가 생애가사노동가치의 평가모형의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구성한 생애가사노동가치 평가모형에 의한 평가방법, ② 주부의 결혼기간의 단계적 진전에 따른 평가방법, ③ 총결혼기간에 의한 평가방법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각 평가방법을 실제자료에 적용시켜 주부의 생애가사노동가치를 평가하여 비교함으로써 어떤 평

가방법이 주부의 생애가사노동가치 평가를 위해 가장 적합한 것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II. 생애가사노동가치의 평가방법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가사노동가치 평가의 연구 경향을 보면, 외국의 경우는 1970년대부터 가사노동의 경제적인 가치평가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Gauger : 1973, Weinrobe : 1974, Hawrylyshin : 1975, Adler & Hawrylyshin : 1978, Murphy : 1978, 1982, Gauger & Walker : 1980, Hefferan : 1982, Chadeau : 1985, Bagi : 1989, Bryan & Linke : 1985, Goldshmidt-Clermont : 1990 등).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였고, 8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연구의 증가와 함께 가사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및 그 경제적 가치평가의 필요성과 방법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외국연구의 소개가 함께 이루어졌다.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실제적인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고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김애설 : 1985, 최명숙 : 1987, 문숙재 · 정영금 : 1988, 소연경 : 1988, 정영금 : 1989, 김선희 : 1990). 90년대에 들어서는 그간의 제반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가족법의 개정으로 주부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신설됨으로써 주부가 가사노동을 통해 가정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그 이후 가사노동가치의 실제문제 적용과 관련한 연구가 발표되었다(문숙재 · 정영금 : 1991, 1993, 문숙재 · 최광 : 1990, 최광 : 1993). 또한 이때까지 도시주부 위주의 가사노동시간조사에 기초한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의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를 함께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행됨으로써 연구지역과 대상도 확대되었다(김정희 : 1993). 그러나 이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떤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주부집단별 평균가사노동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주부가 수행하는 현재의 가사노동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주부가 결혼 이후 현재까지 수행해 온 생애가사노동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는 못 한다.

주부의 생애가사노동가치는 실제문제의 해결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평가방법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평가방법의 이론적 발전을 위해서도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큰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자가 처음으로 개발하여 발표한 바 있는 “생애가사노동가치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김선희, 1991b) 이후 방법론 개발의 필요성이 논의되기도 하였으나(문숙재 정영금, 1991, pp.149-150) 실제적인 평가방법의 개발이나 논의가 아직 구체화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김선희 : 1991b)의 후속연구로서 생애가사노동가치 평가모형에 의한 방법부분은 선행연구의 내용이 토대를 이루고 있음을 밝혀 둔다. 그리고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1991a)의 것으로서, 산출된 생애가사노동가치의 평가나 비교시에는 현재의 가치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기도 하나, 본 연구의 목적은 생애가사노동가치를 산출하여 제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애가사노동가치의 평가방법을 비교하여 보다 적합한 평가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 제한점을 고려하더라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 분석대상은 전업주부의 전형성 확보의 관점에서 조사대상 중 이혼, 별거, 사별하지 않고 현재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전업주부로 제한하였다.

1. 생애가사노동가치 평가모형에 의한 평가방법

생애가사노동가치의 평가모형(이하 생애모형으로 통일함)을 구성하기 위한 대전제는 주부의 생애가사노동량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제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그 구성조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모형의 틀은 가정생활의 경과에 따른 가사노동량의 변동을 충괄적으로 내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주부의 가사노동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세째, 여러 평가방법의 적용이 가능하며, 각 평가방법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상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평가모형의 내용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① 평가모형의 틀

가정생활의 경과에 따른 가사노동량의 변동과 그 생애가사노동시간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study)에 의한 자료수집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조사의 실행이 어렵다. 그러므로 이것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정생활주기(Family Life Cycle)를 적용한 Cohort 접근을 한다. 우선, 가정생활주기는 가정생활에 관한 시계열(time-series)적 변동이나 변화를 가장 잘 나타내며, 그 단계에 따른 가족의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가 잘 반영되므로 주부의 생애가사노동시간과 그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모형의 틀로서 적합하다.

다음으로 생애가사노동시간을 산출하기 위해 가정생활주기를 적용한 Cohort 접근을 하는 것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수십년 동안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즉, 오늘날 가사노동의 상품화, 기계화가 진전되면서 전반적으로는 그 노동과 시간이 감소되고 있지만 그 감소의 폭이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McCallough : 1980, Matsushima : 1981, 김선희 : 1989)와 이와는 달리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생활표준이 높아지게 되고 그 결과 가사노동의 질적 수준향상에 대한 요구와 물자관리의 증대로 인해 보니 긴 가사노동시간이 요구되고 있다는 선행연구(Walker : 1969, Hall & Schroeder : 1970, S. Linder : 1970, Vanek : 1974, V.K. Oppenheimer : 1976, J.P. Robinson : 1980, R. Schettkat : 1985, 한국여성개발원 : 1986, 이기영 : 1987 등)의 두 결과를 종합하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시대적 변화와 가사노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에 의해 신체적 노동을 요구하는 영역의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지만, 이 감소된 시간을 상쇄시키는 요인들이 출현함으로써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일정수준의 가사노동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그 총시간은 별로 변화하지 않으며,

단지 그 내용과 질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전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가정생활주기를 생애가사노동가치 평가모형의 틀로 삼는 것은 이론적으로 기반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② 생애가사노동가치 평가모형구성의 두번째 조건으로서 주부의 가사노동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김선희 : 1991b), 주부의 가사노동은 가족구성원 중 막내자녀의 출생 성장 교육단계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Hall & Scroeder : 1970, 안영희 : 1977, 임정빈 : 1981, 이정수 : 1984, 김선희 : 1989) 막내자녀의 연령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주요변인임을 밝힌 선행연구의 결과와 개별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평가한 선행연구에서 주요변인을 선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 결과, 막내자녀의 연령과 자녀수가 전문직업인 대체법과 종합적 대체법(가정부 대체, 가정부 관리자 2인대체)에서 모두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자녀수 보다 막내자녀의 연령의 값이 약 두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김선희 : 1991b : 244). 이러한 경향은 정영급(1989)의 연구에서도 막내자녀의 연령이 자녀수보다 세배 이상의 설명력을 나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에서 주부의 생애가사노동가치 평가모형은 가정생활주기의 틀에 막내자녀의 연령과 자녀수가 반영되도록 구성되어져야 함이 밝혀졌다. 또한 이 두변인은 각 평가방법에서 모두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냄으로써 해당 평가방법에 각각 적용할 수 있음도 함께 밝혀진 셈이므로 평가모형의 세번째 조건도 아울러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모형의 구성조건이 모두 충족되도록 그 내용들을 결합하면, 주부의 생애가사노동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모형은 막내자녀의 연령을 단계구분의 기준으로 한 가정생활주기의 틀에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text{THWLT} \cdot W \cdot x_1 \cdot F1w + F2w[7 + (\text{fag-lag})] + F3w + F4w + F5w + x_2 \cdot F6w + x_3 \cdot F7w$$

THWLT · W : 주부의 생애가사노동가치

fag : 첫자녀 연령

lag : 막내자녀 연령

- F1w : 신혼기의 가사노동가치
- F2w : 미취학기의 가사노동가치
- F3w : 국민학교기의 가사노동가치
- F4w : 중학교기의 가사노동가치
- F5w : 고등학교기의 가사노동가치
- F6w : 고졸 후 결혼까지의 가사노동가치
- F7w : 결혼 후의 가사노동가치
- THWT : 주부의 생애가사노동시간
- x1 : 신혼기간(결혼-첫자녀 출산)
- x2 : 막내자녀 고졸 후 결혼까지의 기간
- x3 : 막내자녀 결혼 후의 기간

조건) 단 $[7 + (\text{fag-lag})]$ 항은 첫자녀와 막내자녀의 연령 빛 그 터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값이 달라진다.

- ① $[7 + (\text{fag-lag})]$ 항은 lag > 7이면서 (fag-lag) < 7인 경우임
- ② lag > 7이면서 (fag-lag) > 7이면 그 값은 14가 적용됨
- ③ fag < 7이면 fag의 값이 적용됨
- ④ 한 자녀의 경우는 (fag-lag)의 값이 0이 적용됨

위의 식이나 아래 표 1의 가정생활주기 단계별 가사노동가치를 각 평가방법별로 적용하면 개별주부의 평가방법별 생애가사노동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

2. 결혼기간의 단계적 진전에 따른 평가방법

생애모형에 의한 평가방법이 다른 평가방법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른 두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먼저 결혼기간의 단계적 진전을 고려한 평가방법이다. 주부의 결혼기간은 선행연구에서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밝혀졌다(정영급 : 1989, 김선희 : 1990, 1991a). 또한 주부의 연령보다 가사노동의 상황을 더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반영한다는 점을 감안하면(김선희 : 1991b : 123), 비록 단일변인이기는 하지만 평가의 편의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하나의 다른 대안적 평가방법

(표 1) 가정생활주기별 평가방법별 가사노동의 가치
(단위 : 원/월)

평가방법 FLC	전문직업인 대체법	총합적 대체법	
		가정부	가정부·관리자
1. 신혼기	303,647	365,850	414,857
2. 미취학기	510,059	506,531	653,804
3. 국민학교기	339,672	396,169	461,412
4. 중학교기	296,155	364,527	411,567
5. 고등학교기	305,627	373,104	425,100
6. 대학·취업기	293,781	363,404	413,100
평균	346,105	399,250	469,232
F	31.82	16.84	24.40

*** P<.001

출처 : 김선희,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 진업주부를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1991, p.147.

으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가정생활주기와의 상관관계가 주부의 연령보다 결혼기간이 더 높은 점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결혼기간의 단계적 진전에 따른 평가방법은 대부분의 선행 연구(정영금 : 1989, 김선희 : 1990, 김정희 : 1993 등)에서 그 진전단계의 기간을 모두가 5년 간격으로 구성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그 산출모형을 구성할 수 있다.

결혼기간(n년)의 단계적 진전에 따른 생애가사노동 가치

$$= m_1 \cdot W_1 + m_2 \cdot W_2 + m_3 \cdot W_3 + m_4 \cdot W_4 + \\ m_5 \cdot W_5 + m_6 \cdot W_6$$

$$n = m_1 + m_2 + m_3 + m_4 + m_5 + m_6$$

$m_1, m_2, m_3, m_4, m_5, m_6$: 각 결혼단계의 결혼기간(년)

$$1 \leq m_1, m_2, m_3, m_4, m_5, m_6 \leq 5$$

W_1 = 결혼기간 1~5년의 가사노동가치

W_2 = 결혼기간 6~10년의 가사노동가치

W_3 = 결혼기간 11~15년의 가사노동가치

W_4 = 결혼기간 16~20년의 가사노동가치

W_5 = 결혼기간 21~25년의 가사노동가치

W_6 = 결혼기간 25년 이상의 가사노동가치

위의 모형에다 아래의 결혼기간 단계별 가사노동 가치를 적용하면 결혼기간의 단계적 진전에 따른 생애가사노동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

(표 2) 결혼기간 단계별 평가방법별 가사노동가치
(단위 : 원/월)

평가방법 결혼기간	전문직업인 대체법	총합적 대체법	
		가정부	가정부·관리자
5년 이하	460,024	459,068	591,983
6~10년	509,446	511,716	654,902
11~15년	353,136	410,304	477,921
16~20년	307,139	367,866	421,766
20년 이상	311,748	379,519	432,892
F	28.63***	15.25***	22.05***

*** P<.001

출처 : 김선희,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
진업주부를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pp.101, 106,
109.

3. 총결혼기간에 의한 평가방법

총결혼기간에 의한 평가방법은 결혼기간의 단계적 진전이 아닌 총결혼기간에 조사시점의 주부집단의 평균가사노동가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산출방법에 있어서는 가장 단순하기는 하지만 주부의 가사노동 상황의 반영이라는 점에서는 위의 두가지 방법에 미치지는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총결혼기간에 의한 생애가사노동가치 = 총결혼기간 · 기준시점의 평균 가사노동가치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시간을 투입요소로 한 객관적 평가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가사노동가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방법인 요구임금법이나 주관적 평가를 제외한 것은 가사노동의 귀속가치문제와 관련한 문제의 경우는 그 산출근거의 객관성이 무엇보다 요구되기 때문이다.

III. 생애가사노동가치 평가방법의 비교

주부의 생애가사노동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으로서 생애모형에 의한 평가방법, 결혼기간

의 단계적 진전에 따른 평가방법, 종결혼기간에 의한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세가지 방법에 의한 생애가사노동가치를 전문직업인에게 대체했을 경우, 가정부 1인에게 대체했을 경우 그리고 가정부·관리자 2인에게 대체했을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산출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평가방법별 특성과 문제점을 논하고, 주부의 가사노동가치와 관련한 실제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가장 적합한 평가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각 가정생활주기단계에 처해 있는 개별주부의 생애가사노동가치를 고루 평가하여 예시할 수 있도록 여섯 사례(주부 A, B, C, D, E, F)를 중심으로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 여섯 사례는 세가지 평가방법별 생애가사노동가치를 비교 평가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그 생활주기단계에서 주부의 결혼 단계와 기간이 함께 포함될 수 있게 고려하였다. 그리고 현재 신혼기에 해당하는 주부의 경우는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생략하였고, 막내자녀 미취학기는 결혼기간이 5년이하와 10년 이하의 두 경우로 나누어 산출함으로써 주부의 개인적 상황의 차이에 따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각 가정생활주기단계별 해당주부의 특성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가정생활주기 단계별 선정된 주부의 특성

(단위 : year)

주부의 특성	FLC						
	F1	A F2a	B F2b	C F3	D F4	E F5	F F6
신혼기간(s1)	.	2	2	2	2	2	2
막내 연령(lag)	.	1	5	10	15	18	23
첫자녀 연령(fag)	.	3	8	13	18	23	28
결혼기간(mag)	.	5	10	15	20	25	30

주) F1 : 신혼기 F2 : 미취학기 F3 : 국면학교기

F4 : 중학교기 F5 : 고등학교기 F6 : 대학·취업기

위에서 사례로 제시된 여섯주부의 공통된 특성은 신혼기간이 2년이고 2명의 자녀를 가졌으며, 각기 다른 가정생활주기 단계에 있으면서도 결혼기간이 각각 5년씩 차이가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첫 자녀와 막내자녀와의 연령차가 주부B, 주부C, 주부D의 경우는 각 3년으로 구성되었으나 주부A의 경우

는 2년, 그리고 주부E, 주부F의 경우는 5년의 차이로 구성하게 되었다. 이것은 막내자녀의 연령에 기준을 두고 가정생활주기 단계를 구성하면서 동시에 결혼기간의 단계적 진전에 따른 차이를 고려 할 수 있도록 하여 비교의 용이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밝혀 둔다. 실제로는 어떠한 특성을 가진 주부의 경우일지라도 앞에서 제시한 세가지의 산출방법에 의해 각자의 생애가사노동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

주부의 생애가사노동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앞에서 제시한 세가지의 평가방법에다 〈표 2〉, 〈표 3〉의 각 값을 적용한 결과 여섯주부의 생애가사노동가치가 아래의 〈표 4〉와 같이 각각 산출되었다.

여기에서 먼저 가정생활주기 단계별 여섯주부의 생애가사노동가치를 평가방법에 따라 전문직업인대체, 가정부대체 그리고 가정부·관리자 2인에게 대체했을 경우로 산출하여 그 차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적인 경향은 첫째, 주부 A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주부의 경우 모두가 생애모형에 의한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결혼기간의 단계적 진전에 의한 평가로 나타났으며 종결혼기간에 의한 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는 세가지의 생애가사노동가치 평가방법 모두에서 가정부·관리자 2인에게 대체했을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가정부대체였으며, 전문직업인에게 주부의 가사노동을 대체시켰을 때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여기서 주부 A의 경우 다른 다섯 주부의 경우와는 달리 생애 모형에 의한 평가가 결혼기간의 단계적 진전에 따른 평가보다 전문직대체, 가정부대체, 그리고 가정부·관리자 2인대체 모두에서 더 낮게 산출되었는데, 이것은 주부 A의 결혼기간이 5년으로 다른 주부보다 짧은데 비해 신혼기간은 같은 2년으로서 전체 결혼기간 중에서 낮은 가치로 평가되는 신혼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때 생애모형에 의한 평가방법은 결혼기간이 긴 경우에 보다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주부의 생애가사노동가치평가의 필요성이 주부가 결혼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가사노동수행을 통해 기여한 가계재산 형성에의 공헌 및

〈표 4〉 주부의 특성에 따른 평가방법별 생애가사노동의 가치

(단위 : 원)

FLC	주부특성	평가방법	전문직대체	가정부대체	가·관2인대체
주부A	lag = 1	생애모형	25,649,652	27,015,516	33,493,512
	F2a fag = 3	결혼단계	27,601,440	27,544,080	35,518,980
	mag = 5	결혼기간	20,766,300	23,955,000	28,153,920
주부B	lag = 5	생애모형	68,494,608	69,564,120	88,413,048
	F2b fag = 8	결혼단계	58,168,200	58,247,040	74,813,100
	mag = 10	결혼기간	41,532,600	47,910,000	56,307,840
주부C	lag = 10	생애모형	80,722,800	83,826,204	105,023,880
	F3 fag = 13	결혼단계	79,356,360	82,865,280	103,488,360
	mag = 15	결혼기간	62,298,900	71,865,000	84,461,760
주부D	lag = 15	생애모형	100,082,712	106,836,936	131,512,320
	F4 fag = 18	결혼단계	97,784,700	104,937,240	128,794,320
	mag = 20	결혼기간	83,065,200	85,820,000	112,615,680
주부E	lag = 18	생애모형	123,189,036	132,322,500	162,344,820
	F5 fag = 23	결혼단계	116,489,580	127,708,380	154,778,640
	mag = 25	결혼기간	103,831,500	119,775,000	140,769,600
주부F	lag = 23	생애모형	144,483,420	158,603,988	192,232,020
	F6 fag = 28	결혼단계	135,194,460	150,457,920	180,741,360
	mag = 30	결혼기간	124,597,800	143,730,000	168,923,520

주 : 신혼기간(x1)은 2년 공통임

F1 : 신혼기 F2 : 미취학기 F3 : 국민학교기
 F4 : 중학교기 F5 : 고등학교기 F6 : 대학·취업기
 lag : 막내연령 fag : 첫자녀 연령 mag : 결혼기간

그 귀속가치의 평가와 적용을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경우(주부명의의 재산취득시나 남편으로부터의 재산의 증여 및 상속시의 세액산정의 근거자료로서,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시)인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 점이 주부의 생애가사노동가치 평가방법으로서의 적절성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세가지의 생애가사노동가치 평가방법에 따른 차이를 〈표 5〉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논의한 주부 A를 제외한 나섯 주부의 경우, 세 평가방법 중에서 생애모형에 의한 가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두 평가방법에 의한 가치를 비교해 보면, 우선 총결혼기간에 의한 평가치는 전문직업인 대체의 경우 주부에 따라 가장 적게는 17,017,512원에서 가장 많게는 26,962,008원 까지 더 낮게 평가되었다.

가정부대체의 경우는 최저 11,961,204원에서 최고 21,654,120원 저평가는되었으며, 가정부·관리자 2인에게 대체했을 경우는 최저 18,896,640원에서 최고는 무려 32,105,208원이나 더 낮게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결혼기간의 단계적 전전에 따른 가치를 생애모형에 의한 가치와 비교해 보면, 전문직 대체의 경우 최저 1,366,440원에서 최고 10,326,408원 더 낮게 평가되었고, 가정부대체의 경우는 최저 960,924원에서 최고 11,347,080원 더 낮게 평가되었으며, 가정부·관리자 2인에게 대체했을 경우는 최저 1,535,520원에서 최고 13,599,948원 더 낮게 평가되었다.

이상에서 세가지 평가방법에 따른 생애가사노동가치를 비교한 결과, 총결혼기간에 의한 평가는 가장 낮게 산출되었으므로 주부의 생애가사노동가치를 저평가하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결혼기간의

〈표 5〉 평가방법별 생애가사노동가치의 차이

(단위 : 원)

FLC	주부특성	평가방법	전문직대체	가정부대체	가·관2인대체
F2a	lag = 1	a-b	-1,951,788	-528,564	-2,025,468
	fag = 3	a-c	4,883,352	3,060,516	5,339,592
	mag = 5	b-c	6,835,140	3,589,080	7,365,060
F2b	lag = 5	a-b	10,326,408	11,347,080	13,599,948
	fag = 8	a-c	26,962,008	21,654,120	32,105,208
	mag = 10	b-c	16,635,600	10,337,040	18,505,260
F3	lag = 10	a-b	1,366,440	960,924	1,535,520
	fag = 13	a-c	18,423,900	11,961,201	20,562,120
	mag = 15	b-c	17,057,460	11,000,280	19,026,600
F4	lag = 15	a-b	2,298,012	1,898,696	2,718,000
	fag = 18	a-c	17,017,512	21,016,936	18,896,640
	mag = 20	b-c	14,719,500	19,117,240	16,178,640
F5	lag = 18	a-b	6,699,456	4,614,120	7,566,180
	fag = 23	a-c	19,357,536	12,547,500	21,575,220
	mag = 25	b-c	12,658,080	7,933,380	14,009,040
F6	lag = 23	a-b	9,288,960	8,146,068	11,490,660
	fag = 28	a-c	19,885,620	14,873,988	23,308,500
	mag = 30	b-c	10,596,660	6,727,920	11,817,840

주) a : 생애모형 b : 결혼단계 c : 결혼기간

단계적 진전에 따른 평가는 그 평가방법에서 결혼의 단계적 진전에 따른 가사노동량과 내용의 변화가 반영되도록 각 결혼단계의 가사노동가치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종결혼기간에 의한 평가보다는 나은 평가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비교적 산출하는 과정이 단순하다는 점에서 평가의 편의성을 갖추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표 5〉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결혼기간 10년 이하의 경우나 25년 이상의 경우에는 생애모형에 의한 평가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는 점과 그 산출과정에서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이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함께 생각하면 생애모형에 의한 평가방법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근거로 종결혼기간에 의한 평가방법은 주부의 생애가사노동가치를 저평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논외로 하고, 나머지 두 평가방법의 차이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자의 생애가사노동가치를 산출하여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

린데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3차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대체로 단순 서비스직의 임금이 직종별로 볼 때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전문직 대체의 경우는 주부의 가사노동을 저평가할 소지가 있다. 이것은 김애설(1985), 최명숙(1986), 김선희(1990), 김정희(1993) 등의 연구에서 전문직업인 대체에 의한 평가가 종합적 대체법 중 파출부대체에 의한 평가를 제외하고 모든 평가 방법에서 가장 낮게 산출됨으로써 밝혀진 것이다(단, 89년 정영금의 연구에서만 유일하게 전문직업인 대체의 경우가 기회비용법에 의한 평가보다 8,497원 더 높게 나타났음, 보다 상세한 것은 김선희 : 1991a ; 178 참조). 그리고 가정부 대체에 의한 평가는 전문직 대체의 경우보다는 높으나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나타내는 최소한의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김선희 : 1991a). 따라서 주부의 가사노동 내용을 단순가사노동 부분과 관리적 가사노동 부문으로 나누어 가정부·관리자 2인에게 대체하여

산출 한 것이 가장 적합한 평가방법이라 할 수 있으므로(김선희 : 1991a : 158-159, 김정희 : 1993 : 43) 여기에서는 가정부·관리자 2인에게 대체했을 경우만을 산출하여 살펴 본다.

본 연구자의 현재의 생애가사노동가치를 가정부·관리자 2인대체법을 적용하여 위의 세가지 방법으로 산출하는 과정을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신혼기간(x1)=6년 첫자녀 연령(fag)=6세
막내연령(lag)=1세 결혼기간(mag)=12년
 $fag < 7$ 이므로 $[7 + (fag - lag)]$ 항의 값은 fag의
값 (=6)이 적용됨)

① 생애모형에 의한 생애가사노동가치는 앞의〈표 1〉의 값을 적용시키면, $6 \times 414,857 + 653,804 \times 6 = 6,411,966$ 원이며 월단위의 값이 되도록 12(개월)를 곱하면 76,943,592원으로 산출된다.

② 결혼기간의 단계별 진전에 의한 생애가사노동 가치는 $5 \times 591,983 + 5 \times 654,902 + 2 \times 477,921 = 7,190,267$ 원으로 산출되며 여기에 12를 곱하면 86,283,204원으로 산출된다.

③ 총결혼기간에 의한 평가가치는 $12 \times 469,232 = 5,630,784$ 원이며, 여기에 12를 곱하면 67,569,408원으로 산출된다.

여기에서 ③의 경우는 가장 낮게 산출되어 생애가사노동가치를 저평가하므로 일단 논외로 하고, ①과 ②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치의 차이를 보면 〈표 5〉의 결과와는 달리 생애모형에 의한 평가가치가 결혼기간의 단계적 진전에 의한 가치보다 9,339,612원 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본 연구자의 경우 자녀가 없는 신혼기의 낮은 가사노동가치가(〈표 1〉 참조) 6년이나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의 생애모형에 의한 가치를 〈표 4〉의 주부 B와 비교해 볼 때, 결혼기간이 2년 더 긴데도 불구하고 11,469,456 원이 더 적게 평가된 것은 자녀가 없는 신혼기간이 주부 B보다 4년이나 더 길기 때문이다. 그러나 ②의 경우는 이러한 주부개인의 구체적인 특성을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즉, 결혼기간의

단계별 진전에 의한 평가방법은 그 산출과정에 결혼기간이라는 단일 변인만이 반영된 것이므로 평가의 편의성은 있으나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들을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생애모형에 의한 평가는 주부의 가사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가정생활주기, 막내자녀 연령, 첫자녀 연령, 결혼기간 등)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세가지 평가방법 중에서 개별주부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가장 바람직한 평가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IV. 결론 및 논의

주부의 생애가사노동가치는 주부가 결혼한 이후 현재까지 수행해 온 가사노동가치를 평가한 것이다. 이 생애가사노동가치는 주부가 가사노동수행을 통해 기여한 가계재산형성에의 공헌 및 그 귀속가치의 평가와 적용을 필요로 하는 법률적인 문제, 즉 주부명의의 재산취득시나 남편으로부터의 재산의 증여 및 상속시의 세액산정의 근거자료로서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시나 연금수혜시의 객관적인 자료로서 필요하다.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인한 주부의 가사노동능력 상실이 장기적이거나 영구적인 경우는 미래의 가사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가치의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주부의 생애가사노동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그에 선행되어야 하는 평가방법의 개발이 연구의 실천적 목적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긴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가사노동을 하나의 주요 연구영역으로 삼고 있는 가정학의 사회적 사명에 대한 실천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가사노동가치와 관련한 제 문제를 다루는 모든 영역에서 정보를 필요로 할 때 그 결과가 공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별주부의 생애가사노동가치가 평가방법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실제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함으로써 가장 적합한 생애가사노동가치 평가방법을 모색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1991b)에서 제시한 생

애모형에 의한 평가와 다른 두 가지의 평가방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주부 집단의 평균가사노동가치에 단지 해당주부의 결혼기간만을 적용시켜 산출한 총결혼기간에 의한 평가방법은 가정부·관리자 2인에게 대체했을 경우 생애모형에 의한 가치보다 최저 5,339,592원에서 최고 32,105,208원이나 더 낮게 산출되어 상당히 저평가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주부의 결혼기간의 단계적 전전에 따른 평가방법은 생애모형에 의한 가치보다 최저 1,535,520원에서 최고 13,599,948원 더 낮게 평가되었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생애모형에 의한 것과 비교할 때 막내자녀가 국민학교기와 중학교기에서는 각각 1,535,520원, 2,718,000원 정도 낮게 평가되어 상당히 근사한 가치를 나타내었으나 자녀미취학기나 고등학교기 이상에서는 그 차이가 각각 13,599,948원, 7,566,180원, 그리고 고등학교기 이후에서는 11,490,550원 더 낮게 평가되는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이 평가방법의 차이점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본 연구자의 경우를 적용시켜 생애가사노동가치를 산출한 결과, 생애모형에 의한 방법이 주부 개인의 가사노동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을 고루 반영한다는 점에서 세가지의 생애가사노동가치 평가방법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을 토대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질문을 다음과 같이 내릴 수 있다. 개별주부의 생애가사노동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 중 총결혼기간에 의한 평가방법은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상당히 저평가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그리고 결혼기간의 단계적 전전에 의한 평가는 총 결혼기간에 의한 평가방법보다는 나은 것으로서, 비교적 평가방법이 간편하다는 장점을 가졌으나 가사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을 고루 반영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생애모형에 의한 평가방법은 주부 각자의 개인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 요구되지만, 가정생활주기를 평가의 틀로 삼고 있어 가정생활의 경과에 따른 가사노동에 관한 요구를 잘 반영함과 동시에 가사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을 고루 반영하고 있으므로 생애가사노동가치를 평

가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생애가사노동가치 평가모형에 의해 개별주부의 생애가사노동가치를 평가할 경우, 종합적 대체법 중 가정부·관리자 2인에게 대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어떠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일지라도 최소한 가정부대체에 의한 가치보다는 높은 것으로 평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가사노동가치의 평가에 관한 모든 연구의 결과들은 무엇보다도 가정생산의 중요성과 이를 담당하는 주부역할의 중요성을 주부자신과 사회에 먼저 인식시킴과 아울러 현대사회에 더욱 필요한 가정기능의 안정성과 강화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그 다음으로 가사노동가치와 관련한 제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선희, “도시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시간 변화와 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7권 1호, 1989, pp.111-126.
- 2) 김선희,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8권 2호, 1990, pp.73-89.
- 3) 김선희,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a.
- 4) 김선희, “생애가사노동가치의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9권 2호, 1991b.
- 5) 김애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여성연구, 3권 4호, 한국여성개발원, 1985.
- 6) 김정희, “한국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경제적 가치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제31권 4호, 1993.
- 7) 문숙재·정영규, “주부의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9권 4호, pp.149-150.
- 8) 문숙재·정영규, “재산형성에 대한 주부의 기여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1권 1호.
- 9) 문숙재·최광, “주부의 가사노동가치와 세제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 정부장관실 정책자료 90-6,

- 1990.
- 10) 소연경, "주부의 요구임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1989.
 - 11) 안영희, "주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조사연구", 경상대 논문집, 제16권 제2호, 1977, pp. 25-26.
 - 12) 이정수,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22권 2호, 1984, p.118.
 - 13) 임정빈, "도시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19권 2호, 1981, p.82.
 - 14) 이기영,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 15) 정영금, "가정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16) 최 광, "부부재산제와 조세정책", 민자당 정책 연구, 1993.
 - 17)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 1986, p.139.
 - 18) 森岡清美, 家族週期論, (東京 : 培風館, 1978), p. 28.
 - 19) Adler H.J. and Hawrylyshin, "Estimates of The Value of Housework Canada, 1961 and 1971",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pp.333-355.
 - 20) Bagi, F.S., "Nonmarket Time and the Theory of Household Production" Indian Journal of Economics, 1989.
 - 21) Bryan, W.R. & Linke, C.M., "Economic Evaluation of Unpaid Household Work : Africa, Asia, Latin America and Oceania", Geneva I.O, 1987.
 - 22) Gauger W., "Household Work : Can We Add It to the GNP?", J. of Home Economics, October, 1973, pp.12-15.
 - 23) Goldschmidt-Clermont, L., "Economic Measurement of Non-Market Household activities, Is it useful and feasible?",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29-3, 1990.
 - 24) Hall F.T., and M.P. Schroeder, "Time Spent on Household Task", J. of Home Economics, 62-11, 1970, pp.23-29.
 - 25) Heferan Colien, "What is a Homemaker's Job Worth? : Too Many Answers", J. of Home Economics, 1982, p.31.
 - 26) Linder S., The Harried Leisure Class, (New York : Colombia Univ. Press, 1970).
 - 27) Matsushima. C., "Time-Input and Household work-output Studies in Japan : Present State and Future Prospects", J.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5, 1981, pp. 199-217.
 - 28) McCallough, J., "Preliminary Findings from the Interstate Urban/Rural Comparison of Families Time Use, The Household Procedure : A Look Beyond the Market, Mass., AHEA, 1980, pp. 109-118.
 - 29) Oppenheimer V.K., The Female Labor Force in the United States ; Demographic and Economic Factor Governing Its Growth and Changing Composition, 2nd ed., Wesport,(Connecticut : Green Wood Press, Inc., 1976), p.39.
 - 30) Robinson J.P., "Housework Technology and Household Work", Women and Household Labor, ed., S.F. Berk,(Berkeley Hills, Califor. : Sage Publication, 1980), p.64.
 - 31) Schettkat R., "The Size of Household Production : Methodological Problem and Estimates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n the period 1964 to 1980",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1-3, 1985, p.312.
 - 32) Walker Kathryn, "Homemaking Still Takes Time", J. of Home Economics, 61, 1969, p.621.